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6.03.03 기준,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복무 군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12일까지 입금 가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대상자 중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①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용된 부사관 ③ 복무중 또는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④ 기타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교 및 부사관	
계약기간	36개월	
적립한도	매월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만원단위)	
기본금리	연 5.5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0.50%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① 군급여 이체 0.3% ② 하나카드 결제 0.1% ③ 마케팅 동의 0.1%	
재정지원금	정부 예산을 통해 본인 적립금 납입시 적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적립해두고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확인서’원본을 만기해지 시점에 제출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이 상품은 일반과세로 신규되며, 이후 영업점을 통해 비과세한도 등록 가능)
예금담보대출	X	예금담보대출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단위 : 연,%)
(주1) 차등율 : 경과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½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¼	
예금해지	영업점, 스마트폰뱅킹(만기해지만 가능)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치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
- 상품특징 :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복무 군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 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3.03 현재,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대상자 중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①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용된 부사관 ③ 복무중 또는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④ 기타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교 및 부사관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 ※ iMND 복지포털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가능 ※ 가입자격확인서의 가입가능기간 중 매월 1일~12일까지 가입 가능 (매월 13일~말일 가입불가)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26.5월 시행예정) • 해지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만기해지만 가능)		
계약기간	36개월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12일까지 입금 가능)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만원단위), 매월 1~12일까지 신규 및 입금 가능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재정지원금	• 정부 예산을 통해 본인 적립금 납입시 적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적립해두고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원본을 만기해지 시점에 제출하는 경우 적립된 재정지원금을 지급 • 매월 적금 납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정지원금으로 적립 (적금 미납시 재정지원금 미적립) • 단, 관련 법률 또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 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적금 납입이 불가 하며 적립된 재정지원금은 국방부로 환수 • 재정지원금 지급시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지급 ※ 재정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본금리	연 5.5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군급여 이체 (연 0.3%)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군급여가 입금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	
	하나카드 결제 (연 0.1%)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마케팅 동의 (연 0.1%)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마케팅 동의 항목(관계사제공 포함)을 모두 동의한 경우	

중도해지금리	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여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0.20% 적용)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table><tr><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td><td>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td><td>11개월 이상 경과시</td></tr><tr><td>60% 적용</td><td>70% 적용</td><td>90% 적용</td></tr></table>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계약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만기일 연 0.10% 연 0.15% 연 0.20% 기본금리 x 6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약정이율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만기 후 1개월 이내 1개월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만기전일] [1회차] + [2회차] + [3회차] ⋮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납입일~만기전일)/365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납입일~만기전일)/365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납입일~만기전일)/365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일부해지	불가							
자동이체 및 국군급여공제	적립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국군급여공제 서비스를 통해 납입 가능 (국군급여공제: 장기간부도약적금의 월납액을 은행으로 공제한 후 차액만 군급여로 입금하는 서비스)							
계약해지방법	만기해지(재정지원금 지급대상)는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 통해 가능, 그 외 해지는 영업점에서 가능 • 만기해지시 iMND복지포털에서 발급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확인서』 제출 필수 (스마트폰뱅킹 해지는 iMND복지포털 앱을 통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확인서』 비대면 제출) • 중도해지 및 재정지원 미대상(만기전 전액 등) 만기해지는 서류 제출 불필요							
특별중도해지	•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 심신장애 전역(공상), 실종선고, 포로나 행방불명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 가능 • 특별중도해지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증명서류(사망진단서, 국방부 공문 등) 영업점 제출 필수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담보제공	불가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단, 이 상품은 일반과세로 신규되며 이후 영업점을 통해 비과세한도 등록 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하며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센터(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매월 1~12일에 한하여 계좌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신규는 불가합니다.**
- 재정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의 정책 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 3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재정지원금은 해지시점에 적금의 원리금 수령계좌로 함께 입금됩니다.
- 만기해지시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 해지 확인서는 군인공제회의 iMND 복지포털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일 기준 국방인사정보체계상 복무정보가 정상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후 재정지원 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납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재정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재정지원금 지급시 은행이 고시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재정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국방부가 은행에 재정지원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특별종도해지시 본인납입금과 재정지원금에 은행이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신규되며, 영업점 창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전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